

신한카드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관련 공시

(2016.8.1)

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 제13조(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)에 따라, 신한카드 이사회 ‘의장’ 및 ‘선임사외이사’ 선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 합니다.

I. 이사회 ‘의장’ 선임

: 2016년 3월 23일(2015년 결산기 정기주총일) 이사회를 통해,

위성호 대표이사를 신한카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함.

(임기 : 2016.3.23~2016년 결산기 정기주총회)

II. ‘선임사외이사’ 선임

: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

2016년 3월 23일 이사회를 통해, 선임사외이사를 별도 선임 함.

(대상 : 박평조 사외이사, 임기 : 2016.3.23~2016년 결산기 정기주총회)

※ 카드업이 일반 금융업에 비해 제반 환경 및 영위하는 업무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매우 다양한 영역의 안건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함에 따라 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, 카드업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상근직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 중.

또한, 이사회는 본질적인 기능을 담보하고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사회 독립성 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,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, 사외이사 중 ‘선임사외이사’를 1인(박평조 사외이사)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된 사외이사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.

선임사외이사를 별도 선임한 사유는,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 시 최우선으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또는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며, 사외이사회의 운영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회사에 대한 견제수준을 제고 시키고자 함임.